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제1198호 2021. 11. 5. (금)

선람	기 관 의 장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81호 삼척시 도로구간 폐지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8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6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220호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삼척시 공고 제1226호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 14

○ 삼척시 공고 제1226호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제정 시행규칙안 ---------- 24

○ 삼척시 공고 제1248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0

공람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 - 181호

삼척시 도로구간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2.

삼 척 시 장

○ 고 시 일 : 2021. 11. 2. (화)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폐지 3건(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 변경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변경의 경우>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서면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서면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변경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서면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변경 및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사용할 수 없음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부서(☎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폐지 조서 및 위치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위계	관할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m)	기초번호	폐지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m)	폭(m)			
	변경 전 (기존)	대학로 (1차종속구간)	로	성내동	당저동 166-1	당저동 166-2	34	3	20	29-1→ 29-14	도로기능상실 (당저행복주택부지)
	변경 후	폐 지									

위치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 생략.

□ 도로구간 폐지 조서 및 위치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위계	관할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m)	기초번호	폐지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m)	폭(m)			
	변경 전 (기존)	대학로 (2차종속구간)	로	성내동	당저동 166-7	당저동 166-2	45	3.5	20	25-12 → 25-46	도로기능상실 (당저행복주택부지)
	변경 후	폐 지									
위치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 생략.

□ 도로구간 폐지 조서 및 위치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위계	관할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m)	기초번호	폐지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m)	폭(m)			
	변경 전 (기존)	동양길 (1차종속구간)	길	남양동	사직동 220-16	사직동 216-24	58	4	10	18-1 → 18-12	도로기능상실 (삼척선 철도)
	변경 후	폐 지									

위치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 생략.

삼척시 고시 제2021 -18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5.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202-21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50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202-21	20211105	가설건축물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 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110-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길 48	2021110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2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50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202-21	20211105	가설건축물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명칭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110-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길 48	2021110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2021-1220호

「삼척시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삼척시 포상 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삼척시 포상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4조)

- (현행) 삼척시시정조정위원회에 의한 포상 심사 대행
  (개정)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 심사 직접 수행
-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

나.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서무부서)
- 전화 : 033-570-3433
- FAX : 033-570-3133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시외"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외"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4조의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를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1-1226호

「삼척시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우리시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원 및 전입자에 대한 전입장려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라.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공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마. 인구증가시책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일반장려금·전입대학생장려금·전입대학생 추가장려금·전입기념품·출생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규정 (별표 참조)
- 전입장려금 중 일반인과 군인 등에게 차등 지급한 장려금을 5만원으로 변경
- 전입대학생이 시로 전입하여 전입장려금 수령후 재학기간 주소유지시 익년도 부터 전입장려금을 매년 20만원 최대 3년까지 추가 지급
- 전입대학생은 전입기념품을 '영화관람권'으로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기획조정실(인구정책부서)
- 전화 : 033-570-4027
- FAX : 033-570-3131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삼척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입대학생"이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인구증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 및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가. 결혼 지원사업

나. 임신·출산 지원사업

다. 양육·보육·교육 지원사업

라. 일자리·주거 지원사업

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바.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사.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고령사회 대책

가. 고용·소득 지원사업

나. 건강증진사업

다. 생활환경·안전보장 사업

라. 여가·사회활동 장려사업

마. 그 밖에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제6조(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업·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유공 시민, 공무원, 기업,단체 등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3장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

제8조(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별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의 인구정책·출산지원·경로복지·일자리·교육·주택 업무 등 인구정책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의 교육·의료·문화·창업 등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대표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인구정책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제12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자녀가 없는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인구정책 공모 등)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표어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한 시책 발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인구증가시책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장려금
   가. 일반장려금: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나. 전입대학생 장려금: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다. 전입대학생 추가장려금: 제1항제1호나목의 전입장려금을 지급받고 시에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학 중인 전입대학생에게 지급
2. 전입기념품
   가. 주요 관광지 무료관람권: 전입자에게 지급
   나. 종량제 봉투: 전입자 및 전입대학생에게 지급. 다만, 전입대학생 중 대학교 생활관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영화관람권: 전입대학생에게 지급
3. 출생아지원금: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다만,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등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중 전입장려금과 출생아지원금은 현금 또는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 신청대상자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미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전입대학생 전입장려금 추가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입대학생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전입대학생 추가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제제2호가목에 따른 무료이용권을 소지한 사람

[별표]

인구증가 시책 세부지원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비고
전입장려금	제14조제1항 제1호	❍ 일반장려금 - 지급금액 : 1명당 5만원 ❍ 전입대학생 장려금 - 지급금액 : 1명당 20만원 ❍ 전입대학생 추가장려금 - 지급금액 1명당 매년 20만원(최대 3년 지급) - 지급기준: 전입대학생 장려금 신청 후 다음 연도부터 지급 - 추가지급조건 : 전입대학생 장려금을 지급받고 시 관내에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전입기념품	제14조제1항 제2호	❍ 주요 관광지 무료 관람권 - 지급기준: 전입자 1명당 1매 - 대상시설 : 환선굴, 해양레일바이크, 해신당공원 * 다만, 해양레일바이크는 4인이하 전입자 세대 1매, 5인이상 전입자 세대 2매 ❍ 종량제 봉투 - 지급기준 · 1명 : 세대당 1회 20리터 10매 · 2명 이상 : 세대당 1회 20리터 20매 * 다만, 대학교 생활관 거주 전입대학생은 제외 ❍ 영화관람권	

		- 지급기준: 전입대학생 1명당 2매 (20,000원이내) ❍ 전입대학생 확인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출생아 지원금	제14조제1항 제3호	❍ 지원기간: 신청후 1년간 매월 지급 - 첫째아(3만원), 둘째아(5만원),셋째아(7만원) 넷째아 이상(10만원)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1-1226호

「삼척시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제정 시행규칙안

1. 개정이유

○ 우리시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원 및 전입자에 대한 전입장려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전입장려금·전입기념품·출생아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안 제4조)

다. 지원절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영화관람권 사용 및 요금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마. 관리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 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기획조정실(인구정책부서)
- 전화 : 033-570-4027
- FAX : 033-570-3131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시행규칙안 1부. 끝.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전입장려금·전입기념품·출생아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안 제4조)
다. 지원절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영화관람권 사용 및 요금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마. 관리대장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 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장려금 신청) ①「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제1항1호의 전입장려금은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전입장려금은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대학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기는 각 호의 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대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상반기에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다음연도 상반기
2. 해당연도 하반기에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다음연도 하반기

③ 전입장려금은 전입자 또는 전입대학생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입자 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전입기념품의 신청)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념품 신청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생아지원금 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출생아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생아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의 사망 등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삼척시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읍·면·동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주소지 읍·면·동장, 신청자 및 해당 대학교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입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입대학생의 지원자격 유지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주소지 읍·면·동장의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 유지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제6조(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절차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전입기념품은 신청서 접수 시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급한다.

제7조(영화관람권 사용) 제3조에 따른 전입기념품 중 영화관람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영화관람권 요금정산) ① 시장은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영화관의 수탁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영화관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별지 제 8호서식의 영화관람권 청구서에 사용한 관람권과 지급통장 사본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장은 요금을 정산한다.

제9조(영화관람권 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영화관람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의 중지) ① 시장은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출 또는 사망, 말소 등으로 지원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② 시장은 위장 전·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대해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마지막 지원일부터 3년까지는 지원 할 수 없다.

제11조(관리대장 작성·관리) ① 읍·면·동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제3조의 전입기념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의 전입기념품 및 삼척사랑카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전입장려금)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전입일자	. . .

신청인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성별)	. . . (남 / 여)	
	주 소	삼척시 (읍면동)			
	휴대전화		전입자와의 관계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	
	삼척사랑가드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전입자 및 전입대학생이 아닌 대리 신청인은 '위임장'을 작성해주세요

전입장려금 지원신청

◆ 전입자

관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도로명) 신청인과 전입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	비고
본인					

◆ 전입대학생

관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도로명) 신청인과 전입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	비고
본인					

추가 작성 요망	캠퍼스명 (학과,학년)	학번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증번호
			□ 직장 □ 지역	(지역가입자만 기재)

전입기념품 (해당항목 √)	[ ] 주요관광지 무료이용권 (전입자) [ ] 영화관람권 (전입대학생)
	[ ] 종량제 봉투 지원 (전입자 및 전입대학생 * 다만, 대학교 생활관 거주자는 제외한다.)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캠퍼스 대학생)

담당 공무원 확인	확인서류	확인내용	적합 여부	확인자	
	1.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 전입일 이전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신고 여부	적합 부적합	(인)	읍면동
	2. 재학증명서 · 학생증 사본	□ 재학 여부	적합 부적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기재사실 확인	→	신청서 이송	→	지원여부 검정 및 통지	→	지원금 등 수령
신청인		읍면동		읍면동 → 본청		본청		신청인

유 의 사 항

1. 시장은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대학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입신고 전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추가증 발급대상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고 건강보험증번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추가증 발급대상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추가증 발급 비대상자는 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단, 본인이 직장가입자(피부양자)와 지역세대원인 경우는 보험료가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지역가입자가 졸업하면 추가증이 종료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오니 2월 졸업자는 2.28.이전(8월 졸업자는 8.31.이전)까지 전 지역세대주(부모 등) 주소지로 전입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주소변동 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및 안내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하는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및 안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입일자, 주소, 휴대전화, 관계, 캠퍼스명 학과, 학번, 학년, 국민건강보험(구분,증번호)	문서보존기간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삼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및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강원대학교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및 안내	전입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캠퍼스명 학과, 학번, 학년	문서보존기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증 추가증 신청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번, 학년, 국민건강보험증번호,	3년
코나아이 (삼척지역화폐 운영기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및 안내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삼척사랑카드보유여부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삼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이 불가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추가증 발급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법정대리인 포함)은 위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으며, 위의 행정·개인정보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위 임 자 (전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자 (대리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사항	□ 전입장려금 신청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장려금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 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출생아지원금	출생아 성명( ), 출생순위(자녀 중 째)
	출산장려금	출생아 성명( ), 출생순위(자녀 중 째)
	출생아건강보장보험지원	출생아 성명( ), 출생순위(자녀 중 째)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아동수당		[ ] 아동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국민행복카드 신청	[ ] BC카드 (은행) ※ IBK기업, 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우리, 전북, 신협, 제주, 우체국, 부산, 수협, 하나은행 신청 가능	[ ] KB국민카드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 ] 신한카드
			※ 신규 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희망 은행사를 선택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 의 사 항 ,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및 개 인 정 보 이 용·제 공 등 의 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삼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삼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본인은 「삼척시 임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지원 및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지원 및 안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번호(집전화), 모로명주소, 출생순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문서보존기간 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아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래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	3년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협약업체	출생아건강보장보험 서비스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집전화), 출생순위	문서보존기간 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8.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9.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신청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별지 제5호서식]

출생아지원금 지원 관리대장

연번	접수처	신청인						지급처			부(父)			모(母)			출생아			신청사항		지급사항			통장명	비고
		신청일	성명	생년월일	관계	휴대전화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분야	항목	지급명	지급차수	지급일		
합계			명																							

[별지 제6호서식]

전입기념품(관광지 관람권, 종량제 봉투, 영화관람권) 및 삼척사랑카드 관리대장

【 읍면동】

신청일	신 청 인				관광지 무료 관람권(3종)			영화관람권			삼척사랑카드			종량제봉투 (20ℓ			결 재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전입 인원	수령인 (서명)	인수량	지급량	잔량	인수량 (총매수/일련번호)	지급량 (일련번호)	잔 량	인수량 (총매수/일련번호)	지급량 (일련번호)	잔 량	인수량	지급량	잔량	담당자	담당	읍면 동장	
					00매	00매	00매	00매 (000~000)	00매 (000~000)	00매	00매 (000~000)	00매 (000~000)	00매							

[별지 제7호서식]

전입기념품 및 삼척사랑카드 수불부

○○ ○○○								결 재	
날짜	수 입		지 급			잔 량		담당자	담당
	수량(매)	일련번호	지급처	수량(매)	일련번호	수량(매)	일련번호		

* 대장작성은 전입기념품 중 영화관람권 및 관광지 무료이용권 및 삼척사랑카드 별로 작성관리

[별지 제8호서식]

영화관람권 청구서

사 업 명	전입대학생 영화관람권 지급		
업 소 명		대 표 자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사용매수	매		
사업기간	20 . . . ~ 20 . . .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영화관람권 2. 사업자등록증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제정 시행규칙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1-1248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기초시설 적용대상 및 주변지역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 확대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초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용어정의 구체화(안 제2조)

- 환경기초시설 : 환경기초시설 인정 범위의 구체화

(현행)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개정)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중 일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주변지역 :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외 지원지역의 구체화

(현행)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인근지역

(개정)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인정한 통·리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8호 ~ 안 제5조제10호)
- 하수도 사용료 지원
- 지역특산품 저장·판매시설 설치사업
-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준공된 다음연도부터 추진

마.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하수도사업소
- 전화 : 033-570-3525
- 팩스 : 033-570-3192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중 일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분뇨처리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시설
2.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통·리
   나. 가목 외의 통·리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에 따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통·리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7조"를 "제8조"로, "지원심의위원회"를 "지원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원계획"을 "이 경우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필요한"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을 "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사업의 범위)"를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추진"으로 한다.

제5조제5호 및 제5조제8호부터 제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
8. 하수도 사용료 지원
9. 지역특산품 저장·판매시설 설치사업
10.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시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준공된 다음연도부터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사업, 규모, 범위 등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기획조정실장, 환경과장, 하수도사업소장 및 해당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삼척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중 일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분뇨처리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통·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2.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통·리 나. 가목 외의 통·리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에 따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통·리
3. "지원사업"이라 함은 소득기반시설 등 지역개발사업,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보조사업 등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삭 제>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 ---------- ---------- 제8조- ---------- -- 지원 심의위원회---------- ---------- ----------. 이 경우 지원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② ----------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추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5.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등	8. 하수도 사용료 지원
<신 설>	9. 지역특산품 저장·판매시설 설치사업
<신 설>	10.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시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준공된 다음연도부터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사업, 규모, 범위 등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기획조정실장, 환경과장, 하수도사업소장 및 해당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 설>	제14조(수당 등) 삼척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토사유